

8-1. 징계제도 운영현황

(2026년 1/4분기)

창업진흥원

징계제도 운영현황

징계위원회	구성현황	위원장 1명과 외부위원 6명으로 구성 (외부위원 중 2분의1은 노동조합에서 추천받은 예비위원 명단 내 구성) 1. 위원장 : 인사부서가 속한 본부의 장 2. 외부위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또는 공인노무사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②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 직장 내 성희롱 및 성폭력 관련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3분의1 이상 포함 3. 간사 : 인사담당부서장
	의결정족수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징계종류, 효력 및 양정기준		8-1. 징계종류, 효력 및 양정기준.pdf
징계절차		1. 징계의결사항에 대한 발견자가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게 해당사항을 신고 2.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사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에 원장에게 보고 3. 원장은 사안의 경중을 따져 징계위원회에 회부 4. 원장은 징계위원회 회부와 동시에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의결 요구서 등의 사본을 문서로 통보 5.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위원회 참석 및 진술 기회 부여 6. 징계위원회 심의·의결
적용대상자		전 직원

기준일	2025년 12월 31일	제출일	2026년 04월 13일
-----	---------------	-----	---------------

기관 공시 담당자

구분	담당자명	부서명	전화번호
작성자	강은욱	미래인재실	044-410-1596
감독자	이창형	기획조정실	044-410-1560
확인자	김정호	감사실	044-410-1540